

## 북한급변사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중심으로

허재영(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송경호(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이 연구는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한 우리나라 정부의 개념계획 5029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각각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곧 개념계획 5029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의 ‘예외적 무력사용’, 특히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국제법과 논리적 근간이 되는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를 살펴봄으로써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념계획 5029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논리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북한, 급변사태, 개념계획 5029, 선제공격론, 인도주의적 개입, 정의전쟁론

## 1. 서론

개념계획(Concept Plan) 5029는 북한정권의 붕괴와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양국 군 당국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주권침해 요소를 이유로 들어 중단되었다가,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한 장성택이 예상치 못한 숙청을 당하자 북한급변사태 대응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sup>1)</sup>

기존의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7이 전면전을 가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념계획 5029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탈취 위협,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북한주민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국지전 규모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한미연합군은 개념계획 5029에 바탕해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

---

1) 『조선일보』, 2011년 12월 20일; 『조선일보』, 2013년 6월 26일; 『한국일보』, 2013년 12월 16일.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가 완료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문화일보』, 2008년 9월 12일), 우리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로 가정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념계획 5029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군사기밀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존재 및 내용을 확실히 논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은 언론보도 내용이 맞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당시 한미 간의 신뢰도에 있어 곤란함을 겪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고양: 개마고원, 2014), 144~178쪽.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하여 한미 양국이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작전(개념)계획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훈련(Foal Eagle)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작전계획 5027과 개념 계획 5029에 바탕한 훈련이 순차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기본적으로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전면 전의 가능성만큼이나 높아졌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sup>3)</sup>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을 전후로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작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이후 미국 주도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 및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 국내외의 연구 역시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sup>4)</sup>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진지하게

---

2) 『경향신문』, 2013년 12월 16일.

3) 물론,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한 연구도 있다. 대표적 예로 김수민은 2008년에 급변사태의 잠재적 원인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주민불기,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등을 꼽으면서, 특히 가능성이 높은 김정일 위원장의 병사나 자연사의 경우에도 북한 지도부가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제3호(2008), 1~21쪽.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적실성 있는 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는 별개로, 해당 사안이 우리의 삶에 매우 커다란 파급력을 가지게 될 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한국의 대응: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대학학술세미나 자료집』(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7); 배정호 외, 『미·일 新「방위협력지침」과 한반도 급변사태』(서울: 통일연구원, 1997); 배정호·김명기,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배정호,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한반도 급변사태,”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1호(1998), 361~380쪽; 신진, “한국안보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안보,” 『군사논단』, 제17권 1호(1999).

언급되면서,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들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개념계획 5029가 1999년 탄생하게 된다. 이후에도 현실 정치의 부침에 따라 진폭을 그리기는 했지만,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은 개념계획 5029과 관련하여, 현실 정치와 학계 모두에게 중요한 기점이었다. 개념계획 5029에 바탕한 한미연합훈련이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동시에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된 논의 역시 이 시기를 중심으로 재차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도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하에 지금까지 발표된 북한 급변사태 또는 개념계획 5029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sup>5)</sup> ② 이와 관련하여 급변사태의 양상 및 주변국의 대응을

---

5) 박동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제16권 3호(2009), 37~62쪽;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3호(2008), 1~21쪽; 주용식,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예측 및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2호(2009), 287~313쪽; 조경근, “북한 급변 시나리오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9권 1호(2009), 237~272쪽; 이종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이론, 변수, 사례의 도출 및 대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2호(2010), 179~211쪽; 이종철,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 고찰: 정권 붕괴 유형 및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7권 3호(2010), 114~142쪽;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국가전략』, 제16권 4호(2010), 63~92쪽;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2010), 33~60쪽; 이수훈,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4호(2011), 1~30쪽; 정병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실존철학적 접근,” 『통일전략』, 제12권 2호(2012), 225~257쪽; 우평균, “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

시나리오별로 묘사하거나,<sup>6)</sup> ③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의 차원에서 군사적·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것이다.<sup>7)</sup> 최근 정치학계의 논의

입 가능성.” 『평화화연구』, 제14권 4호(2013), 223~246쪽; 박휘락, “북한 ‘급변 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2014), 41~66쪽; 고종건,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106권(2015), 57~90쪽.

- 6)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유형,” 『중국연구』, 제20권 (2001), 59~81쪽; Peter Howard, “Why Not Invade North Korea? Threats, Language Games, and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8, No. 4(2004), pp. 805~828; 라미경·김학린,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분쟁해결연구』, 제4권 2호(2006), 33~58쪽; 고재홍, “북한 급변사태관련 국제적 협력문제 고찰,” 『북한학보』, 제33권 2호(2008), 205~239쪽;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학보』, 제34권 2호(2009), 45~68쪽; Bruce W. Bennett an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2011), pp. 84~119; 이종철,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의 개입 전략 고찰: 개입 유인과 한미연합사 계획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8권 1호(2011), 137~160쪽;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신아세아』, 제19권 2호(2011), 207~231쪽; 이근욱, “북한급변사태와 병력소요 및 운용: 베넷(Bruce W. Bennett)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방연구』, 제57권 3호(2014), 35~55쪽; 신진, “북한의 급변사태와 국제안보: 중국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 4호(2014), 143~166쪽.
- 7) 한국논단, “북한의 급변사태 세미나 지상중계: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논단』, 통권 205호(2006); 김연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신아세아』, 제13권 4호(2006); 정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 『통일전략』, 제9권 1호(2009), 125~164쪽; 한관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전략연구』, 통권 제47호(2009), 63~93쪽; 변창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안보외교전략,” 『통일전략』, 제9권 1호(2009), 9~40쪽; 고재홍,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전략연구』, 제16권 3호(2009), 7~36쪽; 김근식, “북한 급변사태와 남북연합: 통일과정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2호(2009), 57~77쪽; Jong-Yun Bae, “South Korean Strategic Thinking toward North Korea: The Evolution of the Engagement Policy and Its Impact upon U.S.-ROK Relations,” *Asian Survey*, Vol. 50, No. 2(2010), pp. 335~356; 김성한,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공조의 방향,” 『신아세아』, 제18권 4호(2011), 19~44쪽;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전략연구』, 제19권 3호(2012), 147~179쪽; 박휘락,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개입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 『한국의회학회보』, 제2권 1호(2013), 51~71쪽; 남재성·이창무, “북한의

역시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개별 시나리오 검토,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양식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부 국제법학자들에 의해 법적 정당성, 즉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으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의 논리적 정당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sup>8)</sup>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개념계획 5029가 가정하고 있는 급변사태 시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5년 11월 18일에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부터 1966년 7월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1968년의 한미안보협의회의, 1978년의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1991년의 전시지원협정 등에 이르기까지 한미군 당국의 대북전략 기본 기조는 억지(deterrence)에 있었다. 다시 말해,

---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1호(2013), 88~125쪽; 기세찬, “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58권 2호(2015), 61~81쪽; 신진, “북한 급변사태 시의 외세개입과 실행민 대책,”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2015), 171~205쪽; 김정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평화학연구』, 제16권 1호(2015), 129~154쪽; 남성욱·박용한·조평세,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효율적인 안정화와 통합전략: 미군의 안정화작전 교훈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9권 1호(2016), 1~28쪽.

- 8)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북한의 급변사태와 법적 과제』(서울: 푸른세상, 2002); 신범철, “남북한 현안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사태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2008), 73~100쪽; 김병기,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적 근거,” 『중앙법학』, 제12권 4호(2010), 199~241쪽; 신범철,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2호(2011), 1~30쪽; 황성철,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력 개입에 관한 연구: 정당전쟁론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논총』, 제6권(2014), 3~32쪽;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국제관계연구』, 제20권 1호(2015), 37~69쪽.

<표 1> 개념계획 5029 시나리오별 성격

선제공격 차원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위협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인도주의적 개입차원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북한주민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한미 양국군의 목표는 한국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있고 따라서 평시에는 전쟁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만약 북한의 전쟁도발이 있을 경우 이의 확산 또는 재도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항한 전면전’을 가정하고 작성된 작전계획 5027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무력사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한 개입’을 가정하고 작성된 개념계획 5029는 보다 적극적인 무력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개념계획 5029에서 가정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각각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역지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북한으로의 군사작전을 계획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개념계획 5029에 이르러 한미 양국군이 역지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한미 양국군의 대북전략에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앞서 언급한 개념계획 5029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는 그 무력사용의 성격에 따라 <표 1>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①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② 북한

정권교체, ③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등에 대한 무력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으로서의 성격이 있다.<sup>9)</sup> 둘째,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⑤ 북한주민 대량 탈북, ⑥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성격을 갖는다.

작전계획 5027이 방어전쟁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가지는 것에 비해,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가정하는 개념계획 5029는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법상 급변사태와 관련된 선제공격 및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예외적 상황에 대한 무력사용’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에 포함되어있는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국제법상 적법성과 함께, ‘예외적 무력사용’으로서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곧 개념계획 5029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의 ‘예외적 무력사용’, 특히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관련 국제법과 논리적 근거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을 살펴봄으로써 적법성과 정당성을 논할 것이다.

---

9) 선제공격과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 2. 이론적 논의

### 1) 선제공격론

정의전쟁론의 핵심은 “무력의 사용이 때때로 좋은 정치(good statecraft)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무력의 사용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는 정의전쟁론에 관한 그의 저서 *Just and Unjust Wars*의 말미에서 “전쟁의 제한이 곧 평화의 시작(the restraint of war is the beginning of peace)”이라고 주장한다.<sup>11)</sup> 이는 전쟁의 폐지가 아니라, 전쟁의 평화적인 이용이 평화를 가능케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로운 전쟁은 부정의한 평화보다 낫다(just war is better than unjust peace)”<sup>12)</sup> “전쟁의 목적은 더 나은 평화(the purpose of war is to make better peace)”<sup>13)</sup>라는 주장들 역시 왈쩌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전쟁론은 간단히 말해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의전쟁론에서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가장 기본적 조건은 해당 무력사용이 ‘평화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실증주의의

---

10) James T. Johnson, “The Just War Idea: The State of the Ques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23, Iss. 1(2006), p. 168.

11)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ew York: Basic Books, 2000), p. 335.

12) “Just War Tradition”, Th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http://pewforum.org/just-war/\(2000\)](http://pewforum.org/just-war/(2000)); 박정순, “마이클 왈쩌의 정의전쟁론: 그 이론적 구성체계와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 철학연구회 엮음(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에서 재인용.

13) B. H. Liddell Hart, *Strategy*(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4), p. 339.

맥락에서 전쟁의 합법성을 논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전쟁론의 논리에서 정당하지만 국제법상 비합법적인 무력사용도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부당하지만 합법적인 무력사용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정의전쟁론의 기본 전제 조건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국제연합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무력사용’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경우에서처럼 자위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옹호하거나, 국제연합헌장 제1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 혹은 ‘기타 평화의 파괴’와 관계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이는 정의로운 무력사용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는 무력사용’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의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해당 무력사용이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전쟁론은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정의(*Jus in bello*), 그리고 전쟁 종결의 정의(*Jus post bellum*)로 구분하여 적용한다.<sup>14)</sup> 전쟁 개시의 정의가 충족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정의전쟁론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존슨(Johnson)은 정의전쟁론에서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

14) 라틴어 ‘Jus’는 영어의 ‘Justice’와 ‘Law’ 혹은 ‘Right’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롤스는 만민법에서 *ius in bello*를 ‘전쟁수행법’의 의미로, ‘*ius gentium*’을 ‘만민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존 롤스, 『만민법』, 장동진 외 옮김(서울: 이끌리오, 2000), 13쪽과 151쪽. ‘전쟁 개시의 정의’나 ‘전쟁 수행의 정의’와 달리 ‘전쟁 종결의 정의’는 왈쩌가 그의 책에서 추가한 것이다.

있다고 지적한다.

“1. 특정 정치 공동체의 공익에 책임을 지는 주권자만이 무력사용에 의지(resort)할 수 있다. 2. 심각한 피해로부터 공익을 보호하거나, 잘못을 바로 잡거나, 범죄를 처벌하는 등의 정당한 요인(just cause)이 있어야 한다. 3. 무력사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를 천명해야 한다. 이는 무력사용의 목적이 침략, 지배, 무자비한 적의(implacable enmity)와 같은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보호, 복구, 혹은 수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는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정의전쟁론의 주장은 다시 “‘정당한 주체’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무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는 곧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단순히 전쟁의 시작뿐만 아니라 수행과정과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의전쟁론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모순적 행위(무력사용)’를 정당화하는 딜레마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선제공격’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정의전쟁론의 논리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선제공격과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을 구분하는 것이 이러한 조건을 살펴보는

---

15) James T. Johnson, “The Just War Idea: The State of the Question,” p. 169.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줄 것이다.

두 개념 모두 적의 무력사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적이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무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미국의 200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개념을 혼용하기도 했다.<sup>16)</sup>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선제공격은 개념적으로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 (incontrovertible evidence that an enemy attack is imminent)”<sup>17)</sup>하에 실시되는 것에 반해, 예방공격은 가까운 미래에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sup>17)</sup> 전자는 적의 공격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는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이 논리를 확장시켜나가면, 전자에 대항한 무력사용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반면, 후자에 대항한 무력사용은 대개 그 근본적 요인인 적대정권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데에 이를 수 있다.

요약하면,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선제공격은 위협의 대상이 된 정당한 주체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에 기초하여 해당 위협에 대응하려는 제한적 목적에서만 무력을 사용할 때 합당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방공격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 과연 적대정권의 존재 자체가 위협의 근본적 원인인지, 나아가 그것의 제거가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수단인지를 판단할

---

16) 박준혁, “미국 예방공격의 결정적 요인: 북핵 위기와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6집 2호(1999), 139쪽.

17)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JCS, 2004), p. 415.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sup>18)</sup> 바로 이 지점에서 정의전쟁론의 논리에 따라 선제공격은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예방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왈쩌는 “법학자들이 ‘전쟁 직전의 적대 행위들(hostile acts short of war)’로 지칭하는 것들 또한 폭력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전쟁 도발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성급히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sup>19)</sup> 따라서 정당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적대 행위에 대한 매우 조심스럽고 확고한 분석에 기초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불완전한 근거와 일방적 편견만으로 상대방의 정권에 대해 선제공격을 시행할 경우 이는 자칫 예방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제법적으로나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나 침략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인도주의적 개입

일반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도주의 혹은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개입하는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목적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여전히 학계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자별로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정의

---

1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왈쩌는 “오늘날 세계에서 행동할 때, 특히 군사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상대방이 미래에 할 수 있거나 과거에 자행한 사악한 행위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악한 행위에 반응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마이클 왈쩌, 『마르스의 두 얼굴: 정당한 전쟁·부당한 전쟁』, 권영근 외 옮김(서울: 연경문화사, 2007), 26쪽.

19) 위의 책, 198~199쪽.

역시 다르게 내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가 곧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먼저 토니 크누센(Tony B. Knudsen)은 개입을 “다른 주권국가들의 관할범위 안에서 실행되는 자의적이거나 강제적인 간섭”이라고 정의한다.<sup>20)</sup> 사이먼 캐니(Simon Caney) 역시 헤들리 불(Hedley Bull)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를 부분적 혹은 독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착수되고, 주권국가 혹은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에 대해 외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압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1)</sup> 이러한 맥락에서, 테리 나딘(Terry Nardin)은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들은 “대체적으로 해당국의 동의”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력적 개입과 구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22)</sup>

인도주의적 개입이 ‘강압적 행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분명

---

20) Tony Brems Knudsen, “Humanitarian Intervention Revisited: Post-Cold War Responses to Classical Problems,” in Michael Pugh ed., *The UN, Peace and Force* (London: Frank Cass, 1997), p. 146.

21) Hedley Bull, “Introduction,” in Hedley Bull(ed.),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Oxford: Clarendon Press, 1984), p. 1; Simon Caney,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n Andrew Valls(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p. 120.

22) Terry Nardin and Melissa S. Williams eds., *Humanitarian Intervention*(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p. 1; 이와 달리, Intervention을 간섭으로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인도주의적 간섭(humanitarian interference)과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김석현, “인권보호를 위한 안보리의 개입,” 『국제법학회논총』, 제40집 1호(1995), 52쪽.

하지만, 반드시 무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제재 또는 무역봉쇄와 같은 비군사적인 수단 역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윌 버위(Wil D. Verwey)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해당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특히 생명권의 중대하고도 대규모적인 위협을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해당국의 영토 내에서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강제적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up>24)</sup>

그러나 인도주의적 개입에서 말하는 ‘강압적 행동’이 보다 좁은 의미에서 무력 혹은 무력적 위협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가 혹은 특정집단이 타국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국 허가 없이 무력 혹은 무력사용으로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담 로버츠(Adam Roberts)는 보다 강력한 어조로 “주민들의 광범위한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 해당국의 승인 없이 해당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sup>26)</sup>

다른 한편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에 개입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셴 머피(Sean D. Murphy)는 “국제적

---

23) Simon Caney,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p. 119.

24) Wil D. Verwey,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1990s and Beyond: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in Jan Nederveen Pieterse(ed.), *World Orders in the Making*(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8), p. 180.

25) J. L. Holzgrefe,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debate,” in J. L. Holzgrefe and Robert O. Keohane(eds.), *Humanitarian Interven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18.

26) Adam Roberts, “Humanitarian War: Military Intervention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3(1993), p. 429.

으로 인정되는 광범위한 인권박탈로부터 해당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국가들 혹은 국제기구가 무력사용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국제적 인정”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7)</sup> 모가미 도시키(最上敏樹)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의 심각한 박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극도의 인권 침해, 박해가 자행되는 해당국 정부가 그 침해와 박해를 중지할 의사 혹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혹은 복수의 국가, 군사 동맹 등이 군사력을 사용한 무력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sup>28)</sup>

위의 논의에 기초했을 때, 인도주의적 개입에서도 정의전쟁론에서 말하는 일반적 조건, 나아가 왈짜가 지적한 세 가지 정의의 기준 —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정의(*Jus in bello*), 그리고 전쟁 종결의 정의(*Jus post bellum*) — 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즉, 인도주의적 개입이 비록 해당 국가 혹은 특정집단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 강제적 무력사용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과 수행과정, 결과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혹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선제공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매우 조심스럽고 확고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무력적·군사적 행

---

27) Sean D. Murphy,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United Nations in an Evolving World Order*(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pp. 11~12.

28)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3), 21~22쪽.

동이 그 과정과 결과에서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실패하거나 오히려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국제법적으로나 인도주의의 맥락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개입이 아닌,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략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 3. 선제공격론 적용의 경우

#### 1) 개념계획 5029의 적법성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에서 비롯된 근대적 국제관계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에 등장하게 된다. 만국공법으로 상징되는 근대 국제관계의 중심에는 ‘동등한 주권’ 개념에 있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이러한 국제관계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동등한 주권을 전제로 한 조약’은 종종 침탈의 수단으로 오용되었고, 국제법은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저지하기에는 사실상 무력했다. 결과적으로 근대적 국제질서와 평화의 근간인 주권과 조약, 그리고 국제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의 설립자들은 침략의 방지를 평화유지를 위한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적 경제제재를 선택했다. 국제연맹규약 16조에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규약 12, 13, 15조를 어긴 국가는 모든 무역,

금융 관계의 단절, 모든 교류의 금지, 그리고 금융, 상업 혹은 개인적 교류 방지의 대상이 되며, 이사회는 가입국들이 연맹 규약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도록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경직성은 당시의 전통적인 정치, 외교적 구조 속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여겨졌고, 1921년 연맹은 이 16조를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 선택 문제로 만들어버렸다.<sup>29)</sup>

국제연맹의 실패와 뒤 이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탄생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주권의 절대적 강조’ 위에 수립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국제연합헌장 제2조 1항은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7항은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협력의 달성, 국가 간 우호관계의 증진 등 국제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의 하나로써 ‘국내문제불간섭의무’를 명시하고 있다.<sup>30)</sup> 이처럼 주권평등과 무력사용의 포기, 그리고 국내문제불간섭의무가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

---

29) Rita Falk Taubenfeld and Howard J. Taubenfeld, “The ‘Economic Weapon’: The League and the United Nation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t Its Annual Meeting(1921~1969)*, Vol. 58(1964), pp. 183~205.

30) 제2조 7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matters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문제를 이 헌장이 정한 해결방법에 부탁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헌장 원문은 <http://www.un.org/en/charter-united-nations/> 참조.

서 말하는 “국제평화”의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제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합헌장의 체제하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무력적 주권침해는 ‘침략’으로 간주되고 침략국은 ‘공동안보’의 원칙에 따라 강제조치<sup>31)</sup>를 받게 되며, 피침략국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곧 제2조 4항의 무력사용의 포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sup>32)</sup>의 차원, 다시 말해 ‘방어전쟁’의 차원

---

31) 이와 관련된 국제연합헌장 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제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제40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9조에 규정된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면 관계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는 관계당사자의 권리, 청구권 또는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러한 잠정조치의 불이행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 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32)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국제연합헌장 제52조와 제53조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2조 1항: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적 조치에 적합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약정 또는 기관 및 그 활동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그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구성하는

에서 사용되는 무력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국제연합헌장 자체에는 침략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반드시 침략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74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 결의안 3314호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침략의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조)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국제연합헌장과 양립되지 않은 기타의 모든 방법에 의한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제3조)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타국의 영토에의 무력침입, 공격 또는 이에 수반하는 군사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합병, 타국의 항이나 연안의 무력에 의한 봉쇄, 군대주둔협정 위반의 기지사용, 잔류 등”도 침략에 해당된다. 나아가 “(제2조) 국제연합헌장에 위반된 일국 병력의 선제행사(the first use of armed force)는 침략행위의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구성”하며 “(제4조) 안보리는 기타의 행위에 대해서도 침략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sup>33)</sup>

---

국제연합 회원국은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관계국의 발의에 의하거나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하여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발달을 장려한다. 4. 이 조는 제34조 및 제35조의 적용을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제53조 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33) 제성호,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역할: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

따라서 북한이 급변사태 외중에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해올 경우, 한미 연합군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북한의 남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따라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 한국전쟁의 경우에서처럼 안보리가 필요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자위행위는 중지되고 한미 양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취한 조치들은 안보리에 보고되어야 한다.<sup>34)</sup> 국제연합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으로 국제연합군을 조직해야하나, 한국의 경우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에 의해 주한 국제연합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상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제연합군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sup>35)</sup>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면전에 대항하기 위한 작

연구』, 제6집 2호(1999), 397쪽 각주 47에서 재인용.

- 34) 한국전쟁 당시 1950년 6월 25일과 6월 27일의 결의에서 국제연합 안보리는 북한과 평양정권을 국가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전쟁을 북한 당국(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이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평화과괴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였다.
- 35) 국제연합군사령부는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제1511호(국제연합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제1588호(국제연합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근거로 창설되었다.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제1511호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으로 다국적군이 구성되었으며, 제1588호에 따라 미국에게 사령관의 임명과 국제연합 깃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국제연합군사령부 지휘 하에 취해지는 활동과정에 관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를 국제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였고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 국제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국제연합사는 1950년 창설 이후 국제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였으며, 1953년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했다. 1957년 7월 1일에는 일본 동경에 있던 국제연합군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하였다.

전계획 5027는 국제법에 따라 적법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작전계획 5027에 북한의 남침에 대한 응징의 차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까지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 행사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침략 행위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념계획 5029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② 북한 정권교체, ③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등의 상황에 따라, 비록 직접적 침략 행위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력사용을 통해 북한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것일까?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 명시된 국제연합의 목적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는 것임을 상기했을 때, 특정 국가의 주권을 무력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거나 ‘기타 평화의 파괴’와 관계되는 행위 전반을 강제조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항하는 무력사용을 모두 정당화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무력사용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유지활동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해당 분쟁지역에 군, 경찰, 민간인 등의 국제연합 요원을 파견하여 평화를 유지토록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명백한 헌정상의 규정은 없지만 분쟁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하여 적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② 북한 정권교체나 ③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 제기될 경우, PKO로서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북한 급변사태로 인해 무정부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평화유지활동 설치에 대한 동의를 부여할 만한 당사자가 분명치 않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해석에 바탕한 PKO의 개입도 가능할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개념계획 5029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전 개된다면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념계획 5029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군의 군사작전을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PKO의 경우와는 구분되며 국제법상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sup>37)</sup> 나아가 개념계획 5029는 ①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급변사태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으로의 개입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즉 방어를 위한 무력적 개입의 측면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념계획 5029에서 설정하고 있는 무력사용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

36) 제성호,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역할: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396쪽.  
37)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이 급변사태에 따라 무정부상태에 돌입하게 될 경우, 남한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개념계획 5029에 바탕한 무력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남한과 북한 모두 국제연합가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미가 국제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념계획 5029를 실행할 경우 여전히 국제법 위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이다.

수밖에 없다. 선제공격이 현존 국제법 체제에서는 분명히 주권침해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 정부승인에 따라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작업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 2) 개념계획 5029의 정당성

그렇다면 개념계획 5029에 포함되어 있는 선제공격의 개념은 다른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적극적인 형태의 국가안보전략을 추구하면서 선제공격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KO와 같은 예외는 있지만 국제법상 침략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 외의 무력사용은 모두 불법이며, 같은 맥락에서 선제공격 역시 불법적 무력사용으로 규정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선제공격이 정당한 무력사용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논리를 확장해 국제법을 재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전쟁론이 이러한 정당화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이 내포하고 있는 선제공격을 정의전쟁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sup>38)</sup>

---

38) 정의전쟁론과 같이 국제법의 범위 바깥에서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논의에 대한 비판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치의 핵심은 인간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한 이념적 원칙(disembodied principle)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평화란 ‘국제법을 통한’ 평화를 의미한다. 내가 경계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가짜 만병통치약(spurious panaceas)에 집착하는 사람(peddlers), 즉

개념계획 5029은 ‘북한 정권이 언제든지 침략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는 예방공격으로서가 아니라, 선제공격의 차원에서 ‘북한 내부 급변사태로 인해 남한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선제공격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무력사용 전에 위협과 관련된 분명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무력사용의 목적이 정당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한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의 중요성이 강조됨은 당연하다. 나아가 온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력사용의 과정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과 같은 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며, 그 무력사용의 결과 역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개념계획 5029 시나리오 중 ①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② 북한 정권교체, ③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등의 상황에 대해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무력사용의 목표가 ‘북한 정권의 교체’로 설정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물론, 쿠데타나 내전에 의해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의 결과로 정권 교체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와 결과적으로 동일할지언정 정당성의 차원에

---

국제법의 역할에 지나치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주관적 정의의 개념을 법의 이름으로 국가에 강제하려는 사람들이다.” Dean Acheson, “The Arrogance of International Lawyers,” *International Lawyer*, Vol. 2, No. 4(1968), pp. 591~600;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 국제법에 반하는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의전쟁론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전제한다.

서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정권 교체 자체를 개념계획 5029의 목적으로 설정할 경우, 이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예방공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법뿐만 아니라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의전쟁론은 예방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약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침략적 행위이며, 그 근본적 요인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될 수 있다면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적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한 무력사용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정의전쟁론의 논리에 따라 침략적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적 정권의 교체가 정당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 예로, 왈쩌는 “‘예방전쟁’은 일반적인 ‘정당한 전쟁’ 이론 내지는 국제법 측면에서 보면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침략적이거나 살인적인 방식으로 행동한 바 있으며, 재차 이처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포악한 정권을 다룰 때에는 소위 말하는 ‘예방 차원의 무력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9)</sup>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법과 정의전쟁론이 상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개념계획 5029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성격 중 ‘선제공격’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무력사용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이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가정적으로 서술해보면, ‘북한에서 발생한 급변사태가 남한,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

---

39) 마이클 왈쩌, 『마르스의 두 얼굴: 정당한 전쟁·부당한 전쟁』, 30쪽.

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 정권의 교체'를 무력사용의 목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선제공격이 아닌 예방공격으로 간주하고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당화의 요건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 4. 인도주의적 개입 적용의 경우

##### 1) 개념계획 5029의 적법성

개념계획 5029에 포함된 시나리오 가운데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⑤ 북한주민 대량 탈북, ⑥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무력사용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의 경우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타국에 개입할 경우, 현행 국제법상 침략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타국 영토 내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을 인도주의적 개입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에 따른 무력개입은 적어도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에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인도주의적 개입과 같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도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는 곧 인종 청소와 같은 '학살(genocide)'을 의미한다. 학살은 짧은 시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는 학살 행위의 주체로서, 해당 정부일 수도 있고,

해당 정부에 반대하는 무장 집단일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일 수도 있다. 이 중 다른 국가에 의한 전쟁의 경우와 반정부 무장 집단에 의한 내전 상황은 해당 정부에 의해 군사적 지원이 요청되는 경우로,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계획 5029의 ② 북한 정권교체, ③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에서 북한 정부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는 적법한 PKO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개념계획 5029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으로서의 무력사용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이와 같은 대량살상의 경우와는 구분된다. ⑤ 북한주민 대량 탈북, ⑥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 전자는 국경 치안의 차원에서, 그리고 후자는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지 모른다. 만약 인도주의적 개입을 필요로 할 만큼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국경 치안 등을 목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이 역시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한미 양국군의 군사작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계획 5029에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인도주의적 개입으로서의 무력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개념계획 5029는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이 무력적 개입을 통해 해소해야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⑤ 북한주민 대량 탈북의 경우 대량 탈북을 야기한 원인이 대량학살 혹은 정부에 의한 구조적 폭력 혹은 무정부상태에서 기인하는 상황, ⑥ 대규모 자연재해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고 북한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원조를 거부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은 합법적인 것인가? 인권이 주권과 함께 양차대전의 결과로 탄생한 국제연합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 3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제13조 1항과 제55조, 제56조 등 국제연합헌장 전반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를 찾아볼 수 있다.<sup>40)</sup>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을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말하는 “국제평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할 여지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이다.<sup>41)</sup> 다만 인권 중에서도 생명권

---

40) 제13조 1항. 총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 (가)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 원조하는 것. 제 55조 사람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다음을 촉진한다: (가)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 (나)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국제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상의 국제협력; (다)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제56조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41) 일련의 예외적 상황들에 대해 인도주의의 이름 아래 행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

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며, 국적 차원에서 개입의 현실적 사례 또한 존재한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 불법성’ 또는 ‘사면론’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sup>42)</sup>

인도주의적 개입은 대개 생명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허용되는데, 1970년 5월 27일에 선택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호는 이러한 상황을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믿을 만하게 증명된 극심한 인권침해의 지속적 정형을 나타내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43)</sup> 극심한 인권 침해의 상황은 곧 세계인

---

들은 원조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행위들을 규정하는 국제법적 조약들과 관습들은 크게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편찬한 『인도주의법과 인권』에 따르면, 국제인도주의법은 “교전 행위, 전투원과 전쟁 포로들의 지위, 적십자와 적신월사 엠블렘의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며, 국제인권법은 “언론의 자유, 집회, 투표, 그리고 파업을 할 권리 등 국제인도주의법이 규제하지 않는 평화시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인도주의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제 협약들로는 1948년의 대량학살협약(Genocide Convention)과 1968년의 무력분쟁 시 인권(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에 대한 결의문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적 조약들을 포괄하는 국제 규범으로써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법(law of war) 혹은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의 하나는 1998년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의해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시에 개인이 행한 일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어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의 실현이라는 것은 적십자와 같은 구호, 원조 단체의 활동을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무력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2)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 이론과 실제』(서울: 백산자료원, 2004), 107쪽.

권선언 전문에서 설명되는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는” 상황 혹은 나아가 이러한 반란조차 가능하지 않은 일종의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현재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합법은 아니지만 관습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코소보 개입에 대해 코소보 독립국제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 개입이 “불법적이지만 정당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예로 2000년 캐나다에 설립된 ‘개입과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는 인도주의적 개입 논의가 개입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보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sup>45)</sup> 그러나 여전히 보호의 책임이 재건의 책임으로까지 이어지

---

43) Theodoor C. van Boven, “Distinguishing Criteria of Human Right,” in Karel Vasak and Philip Alston eds.,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Westport: Greenwood Press, 1982), p. 47.

44) 스테픈 막스(Stephen P. Marks)는 비상사태로 저개발과 같은 ‘구조적 폭력’과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의 폭력’ 그리고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폭력’을 꼽고 있다. Stephen P. Marks, “Principles and Norms of Human Rights Applicable in Emergency Situations: Underdevelopment, Catastrophes and Armed Conflicts,” in Karel Vasak and Philip Alston(eds.),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Westport: Greenwood Press, 1982), p. 190.

45) Gareth Evans and Mohamed Sahnoun,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Ottawa: IDRC Boos, 2001). 2004~2005년 사이에는 국제연합에서 “보호의 책임”에 대한 두 가지 문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①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2004), originally issued as UN Doc. A/59/565(2004). ②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Larger Freedom: Toward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는 지는 불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은 자위권 행사와 함께 국제법상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유이(有二)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침략에 대항한 자위권 행사에 비해 국제법상 근거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연합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형태로 정당성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명백한 방어전쟁의 경우 피침탈국이 자위권을 우선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인도주의적 개입은 개별국가가 임의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개념계획 5029가 가정하고 있는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⑤ 북한주민 대량 탈북, ⑥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상황이 국제법의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미 군의 일방적 무력개입을 자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2) 개념계획 5029의 정당성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의전쟁론에서도 역시 방어 전쟁과 함께 정당화될 수 있는 무력사용에 해당된다. 개념적으로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무력사용과 달리,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명 구제를 목적으로 상대국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제법에서 개입의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적 합의라는 절차를 강조하고 있

---

Rights For All(2005), originally issued as UN Doc. A/59/2005(2005). 각각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4/602/31/PDF/N0460231.pdf?OpenElemen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5/270/78/PDF/N0527078.pdf?OpenElement>.

다. 이에 반해 ‘평화를 위한 무력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의전쟁론에서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보다 손쉽게 정당화한다. 대표적 예로, 왈쩌는 그가 제시한 법리주의 모형(the Legalist Paradigm)을 통해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에 충격적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당화되며, 이는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sup>46)</sup>

나아가 그는 “학살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국가는 최소한 시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반드시 다자적 접근과 같은 특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sup>47)</sup> 이러한 왈쩌의 주장은 전형적인 정의전쟁론의 목적 중심적인 정당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무력사용의 목적이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국제적 합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우에도 무력사용의 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을 요구할 정도의 인권침해 상황

---

46)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인도적 간섭’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나는 이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즉 여러 동기가 혼합돼 있는 상태에서 인도적 차원의 동기가 그 중 하나인 경우만을 보았을 뿐이다. 오직 인명을 구원할 목적으로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자국 군대를 파견하는 경우는 없는 듯 보인다. 국가의 의사결정에서 외국인의 목숨은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혼합된 동기들의 도덕적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마이클 왈쩌, 『마르스의 두 얼굴: 정당한 전쟁·부당한 전쟁』, 237쪽.

47)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p. 108.

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념계획 5029는 정의전쟁론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다시 정의전쟁론의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정의(*Jus in bello*), 그리고 전쟁 종결의 정의(*Jus post bellum*)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전쟁의 개시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의전쟁론은 단순히 전쟁 개시의 정의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국제법과 정의전쟁론 모두에서 정당한 무력행사로 분류되는 자위권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지라도 불법적이고 잔악한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개념계획 5029에서 가정하고 있는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⑤ 북한주민 대량 탈북과 ⑥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 목적은 각각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이 각각의 상황이 북한 정권의 자의적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다면 정권 교체가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억압자에 대한 공격 자체가 인도주의적 개입의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될 경우, 해당 지역 사람들의 인권이 총체적으로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선제공격의 경우에서도 지적인 바와 유사하게, 인권침해 상황 역시 그 책임의 소재를 절대적으로 해당 정부에 두기 힘들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코소보의 경우, “나토의 폭격은 난민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지만 폭격은 난민을 백배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48)</sup>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개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학살당했을 사람들의

---

48) 타리크 알리 외, 『전쟁이 끝난 후: 코소보를 둘러싼 나토의 발칸 전쟁이 남긴 것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서울: 이후, 2000), 163쪽.

수 보다 적은 수의 희생을 통해 인도주의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개입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학살과 직접적이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우 특히 무력사용의 개시, 과정, 결과에 있어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력사용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이러한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인권이 존중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무력사용의 결과 역시 개입 이전보다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아가 정당한 목적과 과정, 절차에 의한 무력의 사용 역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sup>49)</sup>

결국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단순히 ‘보호의 책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의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무력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권 침해의 주체이기 때문에 무력적 개입을 통해 이 정부를 제거한 상황 혹은 인권 침해가 무정부상황에 의해 발생한 상황에서, 개입국은 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④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⑤ 북한주민 대량 탈북과 ⑥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개념계획 5029의 범위는 무력개입을 위한 군사전략의 차원에서 머무르기보다 개입 이

---

49) 캄(F. M. Kamm)은 비전투원에 대한 살인 행위를 TKN(Terror-killing of none-combatants)으로 명명하면서, 의도되지 않은 살인은 감수될 수 있다는 정의전쟁론과 달리, TKN이 의도된 것인지 여부가 이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F. M. Kamm, “Failures of Just War Theory: Terror, Harm, and Justice,” *Ethics*, Vol. 114, No. 4(2004), p. 653.

후의 정치적 단계까지 포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 계획으로서 개념계획 5029가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 5. 결론

개념계획 5029는 ①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② 북한 정권교체, ③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④ 북한 주민 대량 탈북, ⑤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⑥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국지전 규모의 급변사태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구분에 따르면 한미 양국군은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제거, 직접적인 인도주의적 구호 및 주요 도시, 도로에 대한 경찰력 배치 등의 안정화 작전, 국경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곧 북한 국경을 넘어서는 무력사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계획 5029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를 내포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에 따른 대응을 다시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국제법적 적법성과 정의전쟁론에 바탕한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요약하자면 선제공격의 경우 PKO가 아니라 한미 양국군에 의해 수행될 경우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정의전쟁론의 논리에 따라 정당화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공격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선제공격을 수행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경우, 개입을 요구할 정도의 분명한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국제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국제관습법의 맥락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자적 합의가 요구된다. 정의전쟁론의 맥락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면 개념계획 5029에서처럼 한미 양국군에 의한 일방적 개입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개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인도주의의 기준에 비추어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며, 그러한 제한 안에서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념계획 5029에서 가정하고 있는 무력사용의 상황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 정부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고 무력적 개입을 통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주장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무력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개념계획 5029는 다각적으로 충분한 논의 및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라기보다 현실적 필요성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군사적 목적에서 수립·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개념계획 5029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국내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향후 실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개념계획 5029의 시행 주체가 한미 연합군인 것은 분명하나,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성공

적인 작전 수행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념계획 5029와 같은 형태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것이라기보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념계획 5029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황들이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하나,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접수: 6월 27일 / 수정: 7월 20일 / 채택: 8월 5일

## 참고문헌

### 1. 국내 자료

#### 1) 단행본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한국의 대응: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대학학술세미나 자료집』(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7).
- 김동욱,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 더쇼비츠, 앨런(Alan Dershowitz), 『선제공격: 양날의 칼』, 채윤 옮김(서울: 바이북스, 2010).
- 롤스, 존(John Rawls), 『만민법』, 장동진 외 옮김(서울: 이끌리오, 2000).
- 모가미 도시키(最上敏樹),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서울: 도서출판 소화, 2003)
- 박관용 외,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엮음(파주: 한울, 2007).
- 배정호 외, 『미·일 新「방위협력지침」과 한반도 급변사태』(서울: 통일연구원, 1997).
- 배정호·김명기,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알리, 타리크(Tariq Ali) 외, 『전쟁이 끝난 후: 코소보를 둘러싼 나토의 발칸 전쟁이 남긴 것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서울: 이후, 2000).
- 알저, 마이클(Michael Walzer), 『마르스의 두 얼굴: 정당한 전쟁·부당한 전쟁』, 권영근 외 옮김(서울: 연경문화사, 2007).
- 철학연구회 엮음,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한가』(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 최의철, 『인도주의 개입: 이론과 실제』(서울: 백산자료원, 2004).
-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북한의 급변사태와 법적 과제』(서울: 푸른세상, 2002).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토론 제11차 결과보고서』(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 한국정치학회, 『한반도 급변사태시 과제와 대책: 안보국방관계 특별학술회의 자료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97).

## 2) 논문

고재홍, “북한 급변사태관련 국제적 협력문제 고찰,” 『북한학보』, 제33권 2호 (2008).

\_\_\_\_\_,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전략연구』, 통권 제47호(2009).

고종건,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106권(2015).

기세찬, “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국방연구』, 제58권 2호 (2015).

김근식, “북한 급변사태와 남북연합: 통일과정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2호(2009).

김병기,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적 근거,” 『중앙법학』, 제12권 4호(2010).

김석현, “인권보호를 위한 안보리의 개입,” 『국제법학회논총』, 제40집 1호 (1995).

김성환,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공조의 방향,” 『신아세아』, 제18권 4호(2011).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3호(2008).

김연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남한의 관할권 확보방안,” 『신아세아』, 제13권 4호 (2006).

김열수,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신아세아』, 제19권 2호(2011).

김정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평화학연구』, 제16권 1호(2015).

남성욱·박용한·조평세,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효율적인 안정화와 통합전략: 미군의 안정화작전 교훈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9권 1호(2016).

남재성·이창무, “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1호(2013).

라미경·김화린,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분쟁해결연구』, 제4권 2호(2006).

박동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전략연구』, 제16권 3호(2009).

박준혁, “미국 예방공격의 결정적 요인: 북핵 위기와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 『군사논단』, 제6집 제2호(1999).
- 박창희, “북한급변사태와 중국의 군사개입 전망,” 『국가전략』, 제16권 1호(2010).
- \_\_\_\_\_, “북한 급변사태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전략연구』, 제19권 3호(2012).
-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국가전략』, 제16권 4호(2010).
- \_\_\_\_\_,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개입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 『한국의외학회보』, 제2권 1호(2013).
- \_\_\_\_\_,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2014).
- \_\_\_\_\_,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국제관계연구』, 제20권 1호(2015).
- 변창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안보외교전략,” 『통일전략』, 제9권 1호(2009).
-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유형,” 『중국연구』, 제20권(2001).
- 신범철, “남북한 현안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안보적 관점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의 법사태의 법적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1호(2008).
- \_\_\_\_\_,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2호(2011).
- 신 진, “북한의 급변사태와 국제안보: 중국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 4호(2014).
- \_\_\_\_\_, “북한 급변사태 시의 외세개입과 실행만 대책,” 『통일문제연구』, 제27권 2호(2015).
- 우평균, “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평화학연구』, 제14권 4호(2013).
-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2호(2011).
- 이근욱, “북한급변사태와 병력소요 및 운용: 베넷(Bruce W. Bennett)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방연구』, 제57권 3호(2014).

-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학보』, 제34권 2호(2009).
- 이수훈,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4호(2011).
- 이종철,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 이론, 변수, 사례의 도출 및 대비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2호(2010).
- \_\_\_\_\_,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고찰: 정권 붕괴 유형 및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7권 3호(2010).
- \_\_\_\_\_,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의 개입 전략 고찰: 개입 유인과 한미연합사 계획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8권 1호(2011).
- 정병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실존철학적 접근,” 『통일전략』, 제12권 2호(2012).
-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 『통일전략』, 제9권 1호(2009).
- 제성호,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역할: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6집 제2호(1999).
- 주용식,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예측 및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2호(2009).
- 조경근, “북한 급변 시나리오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제9권 1호(2009).
- 한관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전략연구』, 통권 제47호(2009).
- 한국논단, “북한의 급변사태 세미나 지상중계: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논단』, 제205권(2006).
- 한병진,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가전략』, 제18권 제1호(2012).
- 한인택, “선제공격: 논리와 윤리,” 『전략연구』, 통권 제48호(2010).
- 한희원, “테러의 국제인권 문제의 전개에 대한 영향과 미국 테러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제10권 2호(2008).
- 황성철,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력 개입에 관한 연구: 정당전쟁론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논총』, 제6권(2014).

### 3) 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 2. 국외 자료

### 1) 단행본

Bull, Hedley, “Introduction,” in Hedley Bull(ed.),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Caney, Simon,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n Andrew Valls (ed.), *Ethic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ories and Case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0).

Evans, Gareth and Mohamed Sahnoun,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Ottawa: IDRC Boos, 2001).

Hart, B. H. Liddell, *Strategy*(New York: Praeger Publisher, 1974).

Holzgrefe, J. L. & Robert O. Keohane(eds.),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Knudsen, Tony Brems, “Humanitarian Intervention Revisited: Post-Cold War Responses to Classical Problems,” in Michael Pugh (ed.), *The UN, Peace and Force* (London: Frank Cass, 1997).

Murphy, Sean D.,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United Nations in an Evolving World Orde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Nardin, Terry and Melissa S. Williams(eds.), *Humanitarian Interven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Theodoor C. van Boven, “Distinguishing Criteria of Human Right,” in Karel Vasak and Philip Alston(eds.),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 (Westport: Greenwood Press, 1982).

Verwey, Wil D.,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1990s and Beyond: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in Jan Nederveen Pieterse(ed.), *World Orders in*

*the Making*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8).

Walzer, Michael,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ew York: Basic Books, 2000).

## 2) 논문

Acheson, Dean, "The Arrogance of International Lawyers," *International Lawyer*, Vol. 2, No. 4(1968).

Bae, Jong-Yun, "South Korean Strategic Thinking toward North Korea: The Evolution of the Engagement Policy and Its Impact upon U.S.-ROK Relations," *Asian Survey*, Vol. 50, No. 2(2010).

Bennet, Bruce W. an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2011).

Howard, Peter, "Why Not Invade North Korea? Threats, Language Games, and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8, No. 4(2004).

Johnson, James Turner, "The Just War Idea: The State of the Ques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23, Iss. 1(2006).

Kamm, F. M., "Failures of Just War Theory: Terror, Harm, and Justice," *Ethics*, Vol. 114, No. 4(2004).

Roberts, Adam, "Humanitarian War: Military Intervention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3(1993).

Wirtz, James. 2003. "U.S. policy on preventive war and preemption,"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10, No. 1(2003).

## 3) 기타 자료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4/602/31/PDF/N0460231.pdf?OpenElemen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05/270/78/PDF/N0527078.pdf?OpenElement>.

# Theoretical Discussion on North Korea's Sudden Change

Hur, Jaeyoung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ong, Kyungho

(Dept. of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is article discusses each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 preemptive attack and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assuming the six scenarios of our government's conplan 5029 against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s it is an assessment of the legitimacy of the conplan 5029, it is also a search for a strategy to secure its legitimacy. For such purpose of research,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ity and legitimacy by reviewing related international laws and the Just War Theory which serves as logical basis for two aspects of the conplan 5029, the preemptive attack and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rough these, it indicates the limitations of the conplan 5029, and

points out the need for diverse policy studies.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legitimacy in the level of establishing and enforcing plans.

Keywords: North Korea, sudden change, CONPLAN 5029, preemptive attack, humanitarian intervention, just war theory